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 모두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7. 16.자 판결(92고단1325)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17.자 판결(92노5394)

대법원 1993. 6. 22.자 판결(92도3160)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993년 6월 22일 서울 구로구 홍기운수(주) 노조
위원장 정 씨에 대한 명예훼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동기가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업무처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발견, 이를 대자보로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
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

다며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당하자(서울형사지방법원 제4부)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고단1325 명예훼손

피 고 인 : 정

주거 인천

본직 충남

검 사 : 이영만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9의 6 소재 흥기운수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바, 1991. 4. 1.경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직에 취임하여 전임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권 의 재임 중 업무처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소 발견하고 동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향후 조합장 선거시 동인을 경쟁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991. 4. 20.경 위 회사내 배차실벽에, 모조지 전지를 사용하여 「채육복에 관하여, 1벌당 1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18,000원에 구입하였다」, 「수재의연금에 대하여 지부에서 우리조합원들의 수재현황을 보고받아 수재의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전분회장 권진환 씨는 이러한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극비리에 5만원씩 지급하였다」, 「조합비 전별금 경조비에 대하여 전임자 권 은 업무를 집행한 1988. 7. 1.부터 현재까지 불규칙적으로 조합비는 납부하였으나 전별금 및 경조비는 한푼도 낸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권진환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1992. 7. 16.

판사 조 배 숙

2審 判決文

사 건 : 92노5394 명예훼손

피 고 인 : 정

주거 인천

본적 충남

항 소 인 : 피고인

검 사 : 이동근

변 호 인 :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7. 16. 선고 92고단1325 판결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1992. 4. 경 흥기운수주식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전임 노동조합장인 권 이 재임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은 비위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권 이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검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합 운영세칙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적절한 조치의 강구와 함께 조합의 건설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판시와 같은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것이고, 한편 위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모두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위와 같이 대자보를 부착하

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써, 이와 같은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인 업무처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위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1991. 4.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공개감사 결과, 위 권 이 전임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처리한 업무 중 판시 대자보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 지출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 주로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판시와 같이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먼저 위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공신력이 있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아닌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한 사실이다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면상으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히 권 이 처리한 업무 중 그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를 넘어, 일방적으로 위 권 이 위와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하는 취지로서 보여지는 바,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분회 운영세칙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회계감사결과를 분회장에게 통고하고 총회(대의원 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의 형식이나 취지는 위 세칙에서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결과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장의 지위에서 위 세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부착한 장소는 조합원들만이 드나들거나 사용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관리직 사원 및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배차실로서(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대자보를 부착한 장소가 배차실이 아니라 기사대기실이라고 주장하고, 당심 증인 정 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 판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위 장소에 부착할 경우, 위 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위 대자보를 보게 됨으로써 위 권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소의 애로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감사결과와 보고방법으로서 반드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자보 부착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의문이며(대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통보 등의 방법도 충분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조합을 위한다는 일면이 엇보인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17.

재판장 판사 강 완 구
판사 송 우 철
판사 김 인 겸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2도3160 명예훼손

피 고 인 : 정

주거 인천

본적 충남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동화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임두빈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17. 선고, 92노5394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흥기운수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바, 1991. 4. 1.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에 취임하여 전임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권 의 재임 중의 업무처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소 발견하고 그 사실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려 향후 조합장 선거시 피해자를 경쟁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991. 4. 20.경 위 회사내 배차실 벽에 모조지 전지를 사용하여 「체육복에 관하여, 1벌당 1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18,000원에 구입하였다」(이 뒤에는 「체육복 관련 벽보」라고 약칭한다), 「수재의 연금에 관하여, 지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수재현황을 보고받아 수재의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전분회장 권 씨는 이러한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극비리에 5만원씩지급하였다」(이 뒤에는 「수재의연금 관련 벽보」라고 약칭한다). 「조합비 · 전별금 · 경조비에 관하여, 전임자 권 은 업무를 집행한 1988. 7. 1.부터 현재까지 불규칙적으로 조합비는 납부하였으나 전별금 및 경조비는 한푼도 낸 사실이 없다」(이 뒤에는 「전별금등 관련 벽보」라고 약칭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써, 제1심은 위 인정사실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을 위한다는 일면이 엿보인다고는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 및 수단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1991. 3. 21. 선거에 의하여 임기 3년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홍기운수 주식회사분회(이 뒤에는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분회장(이 뒤에는 조합장이라고 약칭한다)으로 당선되어 4. 1. 취임하였는데, 종전에는 조합의 운영이나 회계감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조합원들간에 오해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합장의 선거에 즈음하여 조합의 운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하였던 사실, 조합의 임원들이 1991. 4. 8.부터 4. 12.까지 사이에 분회 운영세칙(공판기록 제57면 내지 제75면)에 따라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감사를 공개적으로 한 결과,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전임 조합장인 피해자 권 이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처리한 업무 중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 주로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 회계감사를 한 조합의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주된 동기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음에 실시될 조합장의 선거에서 위 권 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검사가 작성한 권 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위 권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이 점에 부합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은 위 권이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위 대자보의 표현방법이 단순한 회계 감사결과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전임 조합장인 위 권의 업무집행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위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목적이 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조합원들에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부착한 장소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배차실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배차실이 주로 조합원인 운전자들의 대기실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운전자등 조합원들 전원이 한자리에 집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배차실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 대자보를 부착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신, 원심 증인 정의 각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대자보의 사진들(제13면, 제14면), 김 및 이 작성의 각 진술서(제48면, 제50면), 간이세금계산서(제49면), 영수증(제51면), 수재의연금 지출관계서류(제52면 내지 제69면)의 각 기재 등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들이 공개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을 알게 된 근거로는, (1) 「체육부 관련 벽보」에 관하여는, 조합원인 김이 조합이 이미 1벌에 금 18,000원씩 주고 구입한 체육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를 뿐 상표와 천이 같은 물건을 시장에서 금 1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가져와 비교하여 보니 품질이 같은 것이었고(피고인은 위 김이 구입한 체육복을 대자보 옆에 함께 부착하여 공개하였다), (2) 「수재의연금 관련 벽보」에 관하여는, 당시 수재의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인 이이 위 권으로부터 수재의연금이 나왔으니 통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수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통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재의연금을 받았다고 말하였으며(당시 수재의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은 모두 6명이었다), (3) 「전별금등 관련 벽보」에 관하여는, 다른 조합원들로부터는 조합비·전별금·경조비를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징수하였는데, 위권진환으로부터는 조합비만 불규칙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징수하였을 뿐 전별금과 경조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개적인 회계감사의 결과 드러난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위 대자보에 기재된 사실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공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위 권 이 조합장으로 재임할 당시 조합의 운영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터에, 공개적으로 회계감사를 한 결과 위 권 이 조합장으로 처리한 업무 중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중의 일부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는 정도로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의 여부와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리검토했다. 다음,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22.

□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김 주 한
주심 대법관 김 용 준
대법관 천 경 송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인천지방법원 1992. 7. 15.자 판결(92고단1106)

인천지방법원 1993. 2. 25.자 판결(92노892)

대법원 1993. 6. 22.자 판결(93도1035)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993년 6월 22일 장 교수, 장 교수, 이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원심판결 내용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사실 적시부분은 진실로서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 로 및 고 에 대한 사실적시 부분은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장 및 장 는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운영하는 인천대학교의 교수들이고, 피고인 이 은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선화여자중학교의 교사로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71년 7월 18일 위 위원회 명의로 『선인학원 현 재단을 전면 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직원 1,200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유인물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 로, 고 에 대해 「교감 자격증도 없는 충

성과 김모 씨는 선화여상의 교장으로, 무자격의 김모 씨는 선인고교 교장으로, 1981년 학원비리 주모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모 씨는 선화여중 교장으로 발령하는 등 백인엽에 대한 충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교원보직인사에 관한 적시부분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학원정상화라는 선인학원 교직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에 의한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 검사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사는 다시 상고를 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고단1106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장

주거 서울

본적 경북

2. 장

주거 서울

본적 경기

3. 이

주거 인천

본적 수원

검 사 : 이 한 승

변 호 인 : 변호사 안 수 일

주 문 :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선인학원의 설립자인 백 이 1981년경 불법 부정행위로 구속 기소된 이후 법인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학원 운영을 국가에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학내 분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산적 빈발하게 되어 학원 정상화 문제에 대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 심각함을 느끼고 있던 중, 1991. 7. 15. 위 학원 산하 16개 교육기관의 교수, 교사,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위원회는 선인학원 정상화의 필요성을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호소하기 위하여 학원내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수십명의 추진위원들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거친 후 『선인학원 현 재단을 전면 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위 위원회 명의로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학원내 교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교직원 1,200여명에게 배포하게 된 것이다.

증 거: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증인 강 의 법정에서의 진술 기록에 편철된 유인물 사본의 기재.

3. 위법성에 대한 판단

위 유인물은 학내문제들에 관하여 100가지의 사례를 10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12장에 걸쳐 작성한 것인데 그 가운데 위 공소사실과 관계되는 부분은 현 재단이 백 의 인사 교육운영 등에 관한 불법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맹종하는 문제, 8가지 사례중 3번째의 사례(교원 보직인사 전횡)에서 기재한 것으로 「교감 자격증도 없는 충성과 김모 씨는 선화여상의 교장으로, 무자격의 김모 씨는 선인고교 교장으로, 1981. 학원 비리 주모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모 씨는 선화여중 교장으로 발령하는 등 백 에 대한 충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라고 위 유인물 중 극히 짧은 부분을 할애하여 적시한 부분이다.

그런데 위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 위 학원내의 교장인 김 , 로, 고 을 일컫는 것이다.

즉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기준은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여져 있는데, 위 김 , 로, 고 등은 모두 교감 자격이 없는 자들로서, 이른바 추천검정(위 시행령 별표 3의 2)에 의

한 교장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는 교원 인사에 있어서 교직경험을 거쳐 주임, 교감 자격의 직책을 거친 후 교장으로 승진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와 같은 일반 관행을 거치지 않았고, 문교부에서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자격 신청을 되도록 억제하도록 한 적도 있었음에도 백 인엽은 교감 자격이 없는 위 사람들을 추천검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교장으로 임용한 것이므로 인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라는 점을 밝힐 의사로 위와 같이 「무자격」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고, 위 고 은 1981. 3.경 위 적시와 같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학원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일념으로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위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것인데, 이로써 김 , 로, 고 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유인물의 작성 동기 그 경 위, 사실공표를 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한 점, 유인물 전체의 내용 및 그 중의 사실 적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선인학원 산하 교직원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증거 :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기록에 편철된 교원 자격증 사본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2. 7. 15.

판사 추 미 애

공소사실

피고인 장 , 동 장 는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인천대학교 교수들이고, 피고인 이 은 위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선화여자중학교의 교사로서 각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위 법인측과 재단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다툼을 하여 오던 중 공동하여 1991. 7. 18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명의로 『선인학원 현 재단을 전면 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목하에 「교감 자격증도 없는 충성과 김모 씨는 선화여상의 교장으로, 무자격의 김모 씨는 선인고교 교장으로, 1981년 학원비리 주모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모 씨는 선화여중 교장으로 발령하는 등 백에 대한 충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200여부를 작성, 그 무렵 선화여상 교사 황등 위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1,200여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선화여상 교장 김, 선인고교 교장 로, 선화여중 교장 고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審 判決文

사 건 : 92노892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장

주거 서울

본적 경북

2. 장

주거 서울

본적 경기

3. 이

주거 인천

본적 수원

항 소 인 : 검 사

검 사 : 이 경 응

변 호 인 : 변호사 안 수 일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1992. 7. 15. 선고 92고단1106 판결

주 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이 선인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설립자인 백

의 영향력 배제 및 학원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유인물에서 구체적으로

등 교직원의 이름을 적시하여 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들이 백 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도만을 이유로 교감, 교장이 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써 개인적인 비난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오로지 학원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된 경위 및 배포의 대상, 이 사건 사실 적시 부분을 포함한 유인물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이를 수증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학원 정상화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25.

재판장 판사 현 순 도
판사 신 태 길
판사 김 동 국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도1035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장

주거

본적

2. 장

주거 서울

본적 경기

3. 이

주거 인천

본적 수원

상 고 인: 검 사**변 호 인:** 변호사 안 수 일**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 2. 25. 선고, 92노892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해자 김 및 고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장 및 장 는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인천대학교의 교수들이고, 피고인 이 은 같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선화여자중학교의 교사로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인 바, 학교법인측과 재단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다투어 오던 중 공동하여, 1991. 7. 18.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위원회의 명의로 『선인학원 현재단을 전면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목하에 「교감자격증도 없는 충성과 김모 씨는 선화여상의 교장으로, 무자격의 김모 씨는 선인고교 교장으로, 1981년 학원비리주모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모 씨는 선화여중 교장으로 발령하는 등 백 에 대한 충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200여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선화여상 교사 황 등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1,200여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선화여상 교장 김 , 선인고교 교장 김 , 선화여중 교장 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백 이 1981년경 학원

운영의 비리로 구속기소된 후 학교법인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학원운영을 국가에 맡기기로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학교내에 이로 인한 분규사태가 빈발하게 되자, 학교법인 산하의 16개 교육기관의 교수·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1. 7. 15.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들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한 사실, 위 위원회는 선인학원 정상화의 필요성을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호소하기 위하여 학원내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수십명의 추진위원들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선인학원 현재단을 전면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위 위원회의 명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관계당국에 청원서 형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학원내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교직원 1,200여명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사실, 위 유인물은 학내의 문제점에 관한 100가지 사례를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12장의 분량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 가운데 공소사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인사교육운영에 관한 불법,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맹종하는 문제」에 관한 8가지 사례 중 3번째 사례(교원보직인사의 전횡)로서 위 유인물 중 극히 짧은 부분을 할애하여 적시한 것인 사실, 위 김 · 로 · 고 은 모두 교감자격이 없이 이른바 추천검정에 의하여 교장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또한 위 로에 대하여 「무자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자격신청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한 문교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에 있어서 일정한 교직경험 및 교감의 자격과 직책을 거친 후 교장으로 승진하는 일반적 관행을 거치지 않은 채 위 백 이 교감자격이 없는 위 김형로를 추천검정의 방식을 통하여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교장으로 임용하여 교원인사의 원칙을 무시하였다는 점을 밝힐 의사로 한 것이며, 위 고 은 1981. 3.경 위 유인물에 적시된 바와 같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인물 중 교원보직인사에 관한 적시부분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또 피고인들은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학원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일념으로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점, 위 유인물의 전체적 내용 및 그 중 위 사실적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사실적시행위는 오로지 학원정상화라는 위 선인학원 교직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될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 2. 14. 선고 88도899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그 배포대상,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포함한 위 유인물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증 피해자들과 관련된 교원보직인사의 전황에 관한 부분은 선인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내의 문제점과 학원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례로 교원의 인사에 원칙이 없음을 거론한 것으로서, 이는 선인학원의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 일반 다수인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임이 분명할 뿐더러, 피고인들이 선인학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공동의장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작성한 위 유인물에 동료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한정하여 이를 배포한 이상, 이와 같은 유인물이 배포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고 또 피고인들이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유인물을 배포한 주된 목적은 선인학원의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다음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자.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김 이 교감자격증을 수여받고 일정한 기간 이상 교육경력에 있어서 교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추천점정의 방법(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에 따라 교장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 교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중 위 김 에 관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충성과」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이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중 피해자 로 및 고 에 관한 부분도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위 로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위 로가 무자격임에도 선인고교 교장으로 발령되었다는 사실의 적시는, 위 김 에 대하여는 「교감자격증도 없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위 로에 대하여는 「무자격의」라고 표현하는 등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교육법상 교장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로가 교장으로 임명될 법적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로가 1976. 12. 29. 이른바 추천검정의 방법에 따라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교장의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수사기록 6면, 82면)만 있을 뿐, 위와 같은 교장자격의 인가가 그후에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로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음으로 위 고 에 관한 부분을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고 이 1981. 3. 경 정원초과입학문제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위 고 을 학원비리주모자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의 정도가 지나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고 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도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중 피해자 로 및 고 에 관한 부분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해자 로 및 고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검사의 나머지 상고(피해자 김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를 기각하기로 관

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22.

□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김 주 한
주심 대법관 김 용 준
대법관 천 경 송

.....

작중인물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성폭행사실을 흥미 위주로 묘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8. 27.자 판결(92고단3622)

事實概要

서울형사지방법원 김상근 판사는 1993년 8월 27일 피고인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했다.

피고 이 씨는 주간연예스포츠의 기자로 재직하면서 「김 씨 사건」 취재과정에서 모은 자료와 傳聞을 기초하여 이를 성폭행 현장소설이라는 명목하에 「나는 사람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중인물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독자들이 소설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피해자 일가의 실제 생활사를 기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소설책을 발행, 성폭행 사실을 성적 흥미위주로 묘사하고, 피해자를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미친 여자로 지칭되는 것처럼 기술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判 決 文

사 건 : 92고단3622(분리)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현재 소재 불명

최후 주거 서울

본적 서울

검 사 : 오 광 수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198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990. 12. 15.경부터 1991. 10. 30.경까지 주간 "연예스포츠"의 취재기자로 근무하던 자인 바, 1991.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8 소재 이 사건 공동피고인 탁 경영의 "도서출판 대성"이라는 상호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연예스포츠"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김 계 대한 살인 피고사건의 취재과정에서 모은 자료와 관련자들의 전문에 기초하여 성폭행 현장소설이라는 명목하에 위 김 이 9세때 공소외 송 에게 강간을 당한 충격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자 모든 것이 송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한을 품어오던중 마침내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그녀의 육체적, 정신적 파탄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형태로 각색해 보겠다고 위 탁 에게 제의하자, 위 탁 은 당시 위 사건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차에 이를 소설화하여 출판하면 상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원고를 가져오면 출판을 해주겠다고 하여 서로 공모한 다음, 1991. 9. 15.경 피고인이 작성한 원고에 따라 위 탁 이 위 출판사에서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라는 제목으로 작중인물에 피해자 김 , 및 김 , 김 등 그 가족들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독자들이 소설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김 일가의 실제 생활사를 기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의 소설책을 발행하면서, 제59면에서 제64면까지 "송씨는 온몸을 저리게 하는 전율 같은 것을 느꼈다. 아홉살짜리 어린 계집애 생각만 하여도 흥분이 그의 온 혈관을 달아오르게 하였다. 송씨의 거친 손이 이의 팬티속으로 들어가 채 성장하지도 않은 여자아이의 그곳을 만지기 시작했다." "송씨는 거친 손으로 이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겨 내렸다. 이의 성숙되지도 못한 어린 그곳은 송씨의 손놀림에 의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송씨는

이의 가냘픈 양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억지로 벌렸다. 송씨는 자신의 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끌어 안았다. 그러나 송씨는 쉽게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다. 몇번을 되풀이 하던 송씨는 입으로 침을 고여 내어 이의 그곳에 칠하고 있었다. 그리곤 자신의 그 부분을 이 몸 안으로 넣었다.” “송씨는 이가 기절하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일어나

이의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훑어보기 시작했다. 송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부분을 이의 그곳으로 밀어 넣어 보았다”라고 김 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성적 흥미위주로 묘사하고,

제135면에 “ 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의 옷도 강제로 벗겼다. 부남이는 알몸이 된 을 보자 아홉살때 송씨와의 일이 어지러히 떠올랐다. ‘잘못했어요’ 이는 그저 무서워 아홉살때처럼 무조건 빌었다. 그렇지만 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이를 강제로 짓밟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는 밤이 되는 걸 두려워 했다. 밤만 되면 되살아 나는 악몽때문에 미칠것만 같았다.” 제230면에 “ 이는 부산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웃사람들과의 다툼도 끊임 없이 없었다. 동네사람들이 둘만 모여 수근거리도 이는 욕을 하고 대들었다. ‘미친년이라, 미친년이라’ 동네아이들이 부남이가 지나가면 쫓아다니며 이를 놀렸다” 제280면에 “또 시작이야.

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20대 여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그냥봐둬, 어렸을때 당했던 일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 제정신으로 사는게 이상하지’ 40대 여자가 두둔하고 나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미친년 미친짓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같이 저런 꼴을 보면서 살아요, 재수가 없을래니까 미친년이라 한방을 쓰게 되는군’ 제282면에 “의사가 흥분한 이를 진정시키려고 몸에 손을 대자 이는 놀라서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다. ‘가까이 오지마, 내몸에 손대면 가만 안봐둬’ 의사가 이를 구슬러 얘기를 하게 하려 했으나 이는 고래고래 악을 쓰며 구석으로 파고 들었다”라고 김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도 미친 여자로 지칭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제240면에 “ 이는 송씨가 아까부터 히죽히죽 웃는게 눈에 거슬렸다. 송씨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또 고개를 들었다” 제244면에서 제246면까지 “ 이는 벌떡 일어나 송씨에게로 다가갔다. 칼을 꼭 쥐채 송씨의 아내를 이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으려 하였다. 부남이는 칼을 안 빼앗기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는 허리 왼쪽에 차고 있던 작은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송씨의 하복부를 향하여 힘껏 내리찔렀다. 는 울면서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다. 이는 옆으로 쓰러지면서도 칼을 움켜 잡고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깨끗이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아 버렸다. 이는 눈위에 주저앉아 울었다. 칼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다.”라고 김 의 살의와 잔인성을 과장하여 표현한 내용을 게재하여 발간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과 탁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김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소설 1권(증제1호)의 현존 및 기재내용

1.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찰주사 박 이 작성한 미상전과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김 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993. 8. 27.

□

판사 김 상 근

비방할 목적으로 최 회장이 통일교와 관련됐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를 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8. 30.자 판결(93고단1788)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24.자 판결(93노6952)

事實概要

서울형사지방법원 제3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24일 조 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 원

심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그룹 최 회장이 통일교와 관련됐다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은 조각된다는 피고측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은 최 을 비방할 목적으로 통일교와 최 일가의 관계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포함으로써 최 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피고 조 씨는 1993년 2월 「최 의 일가가 통일교 의식인 피가름의 혼음의식을 했다」, 「최 이 63빌딩을 건축하고 전주대학을 인수하며 극동아세아방송국 이사장에 취임하고 종교잡지를 발행하며 기독교계에 거액의 현금을 하는 것은 모두 통일교의 자금을 받아 통일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책자로도 발간하자 최씨의 고소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서울형사지법 제5단독 한덕렬 판사는 「피해자 최 은 통일교를 믿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하자 피고는 항소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3고단178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조

주거 서울

본적 전남

검 사 : 봉 욱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책자 1권(증재1호)을 몰수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8.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피해자 최 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 최 의 어머니와 누나들이 과거 통일교를 믿은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 통일교도가 아니고 피

해자 최 ○은 통일교를 믿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통일교와 관련시킨 허위의 사실을 날조 유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와 같이 복역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무마비 형식으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최 ○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2. 12. 초순경 서울 ○ 피고인의 집에서 ‘신동아그룹 및 4음녀와 통일교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최 ○의 모, 누나, 처가 통일교 의식인 피가름의 혼음의식을 하여 통일교 교주 문 ○과 성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63빌딩을 건축하고 전주대학을 인수하며 극동아세아방송국 이사장에 취임하고 종교잡지를 발행하며 기독교계에 거액의 현금을 하는 것은 모두 통일교의 자금을 받아 통일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라는 허위 내용을 게재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 581 선교교회 사무실에서 위 교회 목사인 김 ○에게 이를 보여 주면서 통일교의 진상을 고발하고 그 동조자인 피해자도 기독교계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허위 내용을 설명하고, 계속하여 같은달 중순경 같은 교회의 목사인 구 ○에게, 같은달 하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기독교신문사 발행인인 이 ○에게 위 유인물을 보여 주면서 허위 내용을 설명하는 등 기독교계 인사 수십명에게 위 내용을 전파하고, 계속하여 1993. 2. 일자불상경 ‘세계한국기독교 종교개혁 추진을 위한 문선명 통일SEX집단 개신교대책추진준비협의회’라는 단체의 명칭으로 ‘NEW COMMUNISM OF THE SEX SATYRIASIS NYMPHOMANIA 문 ○ 통일교 집단 THE WIFE CHANGE SHOW SEX CLUB 문 ○-박 ○ (최 ○ 계모), 최 ○-이 (최 ○ 생모), 사음녀-이 ○ (최 ○ 생모), 최 ○ (최 ○ 첫째 누나), 최 ○ (최 ○ 둘째누나), 이 ○ (최 ○ 처)’라는 표제를 붙인 책자(증제1호)를 발간하여, 위와같은 허위 내용을 다시 게재하면서, ‘최 ○의 첫째 누나인 최 ○이 자기 생모 이 ○을 모 여관으로 안내해 혼음(피가름)영체교환을 했다고 해서 최 ○을 음행매개혐의로 구속했다고 검찰은 신문에 발표했다’ ‘문 ○이 간음을 얼마나 범했나 일차적으로 신동아그룹 최 ○ 일가, 사음녀, 즉 생모 이 ○, 큰딸 ○, 둘째딸 ○, 며느리 ○ 등’ ‘최 ○이 그의 모친 이 ○을 모 여관에 문 ○과 혈통복귀 혼음행사를 할때 여관방밖에서도 두 무릎을 꿇고 2내지 3시간 기도를 드렸다’ ‘피가름의 씨앗 최 ○, 피가름의 원조 문 ○의 통일교 집단에 전 가족이 몸 담고 있을 때 최 ○ 생부 최 ○는 그의 처 이 ○을 피가름의 대부분 문 ○에게 인계하고 특별히 남자를 잘 홀기는 박 ○은 문 ○의 여인인데 신동아그룹을 먹기 위하여 전략상 최 ○에게 바꿔치기한 것이 1968. 1. 22. 피가름의 행사인 희망

의 날에 행하여졌다고 전한다' '최 의 첫째누나 최 이 피가름의 원조 문 과 희망의 날 행사 혼음을 하고, 생모 이 을 통일교에 끌어 들이고 이화여대에 다니던 둘째 최 를 통일교에 끌어 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 의 생모 이 과 피가름을 했으니 의붓아버지격이요, 첫째누나 과 둘째누나 가 피가름을 했으니 문 의 매부격이며, 문 과 이 가 피가름을 했으니 한집 동서지간이 된 꼴이라 했으니 폭소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분노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 일가는 피가름원조 문 통일교집단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마누라마저 문 에게 빼앗기고 대기업마저 통일교에 넘겨주는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63빌딩을 세우기 위해 국세청과 서울시 등 모든 공무원에게 돈을 틀어막는 상태였다고 들립니다' '통일교자금이 최 를 통하여 이 에게 건너와 63빌딩이 건립된 것이다' '최 과 이 의 3억 거액이 통일교 돈이라는 말을 누가 한 철하목사에게 말하였다' '전주대학교까지 통일교계통의 교육계책임자인 윤 을 시켜 인수하려 하였던 것은 신동아그룹이 통일교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가 햇빛선교회 선교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기본수법 피가름현장으로 인도되어 목회 일선에선 통일교의 금력의 몽둥이에 얻어맞아 일생을 파멸로 끝나는 비극을 연출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을 거역하면 섹스의 사진이나 세미나 후 기념사진으로 협박하여 그들의 종으로 이용한다' '1984. 여름 여의도에서 빌리그래함 목사 부흥집회때 이 는 1억을 현금하였는데 그돈이 통일교의 검은 돈일진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는 통일교 섹스집단 검은 돈 잘 받아먹는 양의 가족을 쓴 이리떼 목사들 끄는 지 을 가지고 다니는지 알수는 없지만' '신동아그룹은 양분되어 통일교로 넘어갔고 63빌딩 및 대한생명까지 문서적으로 주식의 60%이상 통일교로 넘어간 상태이다'라는 등 허위 내용을 게재하여 같은해 3. 5. 경 한국기독교사회문제대책협의회 회장인 공소외 김 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 위와같은 방법으로 이를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최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책자 1권(증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선택)

1. 형법 제57조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993. 8. 30.

판사 한 덕 렬

2 審 判 決 文

사 건 : 93노695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조

주거 서울

본적 전남

항 소 인 : 피고인

검 사 : 봉 욱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8. 30. 선고, 93고단 1788 판결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출판한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모두 통일교와 최 일가의 관계에 관한 진실된 내용이고, 피고인이 이를 출판한 의도도 목사로서의 종교적 사명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 것일 뿐 위 최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거나 정당방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은 이와 똑같은 행위로 이미 1986년도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 을 비방할 목적으로 통일교와 위 최 의 일가의 관계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포함으로써 위 최 의 명예

를 훼손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법리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 최 ○ ○ 에 대한 명예훼손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을 복역한 이후 다시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4.

□

재판장 판사 박 송 하

판사 김 용 상

판사 오 석 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 영양가 시험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의 반박광고를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 1991. 2. 26.자 판결(90고단108)

춘천지방법원 1993. 11. 4.자 판결(93노225)

事實概要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광현수 부장판사)는 1993년 11월 4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백만원을 선고, 1심 판결보다 다소

가벼운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나 최씨가 우유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를 위해 노력했고 학교법인을 설립,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9년 8, 9월동안 각 일간지의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와 목장부지를 확장하면서 농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991년 2월 26일 춘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1審 判決文

사 건 : 90고단108 가. 환경보전법 위반

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초지법 위반

라. 건축법 위반

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바. 업무방해

피 고 인 : 최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강원

본적 서울

검 사 : 이 중 환

주 문 : 피고인을 징역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건 공소사실 중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무죄.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88. 7월 초순경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조업중인 위 파스퇴르유업(주) 내에 환경청장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세척시설, 윤활유 교환도크, 이화학 실험실 등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
2. 1989. 5월 중순 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1의 11 답 1,667평방미터 중 662평방미터와 같은 리 1331의 23 답 1,232평방미터 중 571평방미터 등 합계 1,233평방미터의 상대 농지를 주차장 용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여 이를 전용하고,
3. 같은 날 위 같은 리 1331의 11, 같은 리 1331의 23 지상 위에 횡성군수에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함석, 합판 등을 사용하여 건평 65.61평방미터의 공사용 가설건물 1동을 축조하고,
4. 같은 해 9. 16. 위 같은 리 1295 전 1,098평방미터 중 687평방미터, 같은 리 1296 전 1,289평방미터, 같은 리 1297 전 3,068평방미터 중 2815평방미터 등 합계 4,791평방미터의 상대 농지를 택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하는 등 이를 전용하고,
5. 같은 날 위 같은 리 산 198의 10 목장용지 5,965평방미터 중 1,396평방미터의 초지를 택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의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이를 전용하고,
6. 같은 해 9. 18.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사이에 위 같은 리 1295, 같은 리 1296, 같은 리 1297 지상 위에 횡성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평 365.49평방미터와 건평 234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각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건축하고,
7. 같은 해 9. 30. 위 파스퇴르유업(주)에서 조업을 하며 배출시설인 세척설비에서 배출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폐수 약 2톤을 하수구에 유출시켜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정상운영 하지 아니하고,
8.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죄 중 범죄일람표 제1의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판시 제3죄의 벌금형을 병과)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판시 제8사실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판시 8, 9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부적 명예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것이 학술잡지라든가 전문잡지에 실리는 경우와 일반대중이 보는 일간지에 「광고」로 실리는 경우는 위 조문상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 건과 같이 어떤 사람의 발표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그 발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과장, 그 내용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임의로 추측하는 것 등의 내용이, 전문지에 실린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전체 글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허위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내용이 일간지에 「광고」로 실리면서 이러한 자의에 의한 삽입, 과장, 추측 등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 부분만을 큰 글로 실어 강조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특성(일반인은 강조된 부분만으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얻거나, 강조된 부분에 비추어 다른 부분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는 광고주가 그러한 광고로부터 얻으려는 이익과 책임의 비례의 원칙(광고주는 사실상 그 강조부분으로 광고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서도 책임은 강조부분만이 아닌 전체 글과의 관계에서만 지려고 한다면 이는 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 및 형평에 맞지 않는다)을 고려하여 일반대중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 및 이 강조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 글을 해석하는 방법을 종합하여 그 허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설령 전체적으로 보아 광고의 내용에 일부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삽입, 과장, 추측 등으로 강조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구체적,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발표내용과는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있는 임의의 과장, 추측, 삽

입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광고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견해는 모두 거짓 또는 사실의 왜곡이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허위의 사실로 위 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건 공소사실 중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광고문안의 내용인,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 없다는 「해피망촉」한 발표를 하였다는 부분 또는 소비자보호원 분석의 「허구성」이라는 부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1. 2. 26.

판사 지 대 운

〈별지〉

(피고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 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평소 저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파스퇴류유업(주)의 우유제품이 초고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타사제품 우유제품에 비하여 영양가 면에서 우수하다는 홍보를 하여 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치되는 위 검사결과발표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 회사 홍보담당자인 공소외 을 통하여,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소비자보호원이 허구적인 분석으로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 없다는 해피망촉한 발표를 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자	신문명	내용
1	89. 8. 28.	동아일보 1면	소비자보호원이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씨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터무니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동원의 엉터리 데이터 때문에 국민이 좋은 우유를 마실 기회를 놓친다는 내용
2	89. 8. 29.	세계일보 3면	
3	89. 8. 30.	조선일보 3면	
4	89. 9. 7.	한국일보 1면	
5	89. 8. 30.	조선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연습삼아 취미삼아 부정확하고 의미없는 데이터를 공표하여 사회보전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이 좋은 우유의 선택의 길을 잃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내용
6	89. 9. 1.	한국일보 3면	
7	89. 9. 5.	동아일보 3면	
8	89. 9. 8.	국민일보 3면	
9	89. 9. 1.	한국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과학술어 조차도 자기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이 상부기관인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여 국민보건에 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내용
10	89. 9. 5.	동아일보 2면	
11	89. 9. 8.	국민일보 2면	
12	89. 9. 6.	동아일보 1면	원유가 일반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유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 관계직원은 분석을 통하여 좋은 우유에 비타민 씨가 적고 나쁜 우유에 비타민 씨가 많다. 비타민 씨가 많은 우유를 저온처리 했을 경우에 비하여 비타민 씨가 적은 우유를 고온처리 했을 때 비타민 씨가 많다고 하였다는 내용
13	89. 9. 11.	경향신문 3면	
14	89. 9. 12.	조선일보 1면	
15	89. 9. 11.	경향신문 2면	민간단체가 아닌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내용
16	89. 9. 13.	조선일보 3면	
17	89. 9. 13.	조선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우유성분에 관하여 장난같은 무기분석데이터를 내놓고 마치 이것을 우유의 생명인 칼슘, 단백질 등 영양과 관계되는 양 발표하였다는 내용
18	89. 9. 15.	동아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이 엉터리 데이터를 과학의 이름을 빌려 악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이면서 이러한 사회악을 저지르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등의 전화 및 충고가 있을 정도로 사회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2審 判決文

사 건 : 93노225 환경보전법 위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 고 인 : 최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강원

본적 서울

항 소 인 :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 이 현 득

변 호 인 : 변호사 윤 승 영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1991. 2. 26. 선고, 90고단108 판결

한송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유지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첫째, 원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중 5 내지 17의 광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인 권 또는 김 개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 광고들의 내용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명예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광고들으로써 위 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광고는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의 상무 윤 과 직원 정 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윤 이나 정 에게 이 사건 광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도 위 광고문안을 직접 보거나 보고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의 주체가 아니다.

셋째, 어떠한 행위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우유의 영양가와 같은 것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명되어야 만 비로소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생산하는 파스퇴르우유는 생유를 섭씨 72도 이하의 저온에서 살균하는 것으로 우유 속에 유산균이 살아 있고 카제인기와 결합된 칼슘 및 알부민 단백질이 있으며 비타민 씨(C)가 파괴되지 아니하나, 그밖에 시판중인 대부분의 우유는 섭씨 120~135도의 고온에서 멸균하므로 유산균이 없고 카제인기와 결합된 칼슘중 가열로 카제인기가 떨어져 나가고 인산기와 결합하여 인산칼슘이 되므로 그 10퍼센트 정도만 이 인체에 흡수되고 알부민 단백질 및 비타민 씨(C)는 가열로 파괴되고 마는 것인데, 이러한 살균방법에 의한 우유의 영양가의 차이는 무기실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고 모든 첨단과학실험을 하여야만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무기실험에 의한 실험결과만을 가지고 우유의 질은 모두 같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위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는 진실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반박한 이 사건 광고는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에서 낸 허위의 광고가 아니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진짜 유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온갖 모험을 무릅쓰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기업의 경영인으로서가 아니라 유제품을 만드는 기술자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익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업무에 대하여 광고등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더욱이 이에 관하여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피해자는 그 출판물의 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광고의 게재 경위 및 전체적인 광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파스퇴르우유를 포함한 시판우유 10개 제품을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대한 시험검사

를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 항목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러한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반발하여 게재한 것으로서, 원심 범 죄일람표 5 내지 17의 광고 문헌 자체가 「소비자보호원」 권 씨 또는 「소비자보호원」 김 실험실 부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위 권 나 김 의 사적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의 지위에서 그 업무로서 한 위 우유의 품질 검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어서 이들 광고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나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범죄일람표 9 내지 11의 광고는 그 문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윤 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9. 8. 23. 같은 회사 상무인 윤 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 게재 사실을 보고받았고, 같은 달 27. 광고를 계속 게재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하였으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광고는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중인 윤 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의 책임을 묻은 것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광고가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환송전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생산하는 파스퇴르우유는 저온살균법에 의하여 제조되어 영양가의 손실이 적고 유산균이 살아 있어 초고온살균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른 회사의 우유제품에 비하여 성분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영양가면에서는 훨씬 우수한데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잘못된 분석 항목과 분석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발표하여 일반 국민들이 좋은 우유를 선택하는 것에 혼란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상토론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 의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권 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 작성의 조 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원심의 국립보건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및 아이.디.에프(IDF) 보고서 제132호 등의 참고자료들을 종합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1986. 12. 31. 법률 제3921) 제26조를 근거로 하여 정부출연기금을 재원으로 1987. 7. 1. 설립된 특수공익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제17조에 의거,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1987년경부터 우유의 저온살균방법 제품과 초고온살균방법 제품간에 영양가 차이 분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우유의 영양성 및 안전성에 대한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공표하라는 여론이 일고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자 소비자보호원에서 1989. 3.경부터 7.경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저온살균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파스퇴르우유와 초고온살균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3·4우유, 두산우유, 롯데우유 등 9개사의 우유를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 소비자보호원은 위 시험대상제품을 선정함에 있어 저온살균 및 초고온살균 제품별로 시장점유율이 크고 서울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였고, 식품학계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식품학계 교수 3인, 영양학계 교수 1인, 식품연구기관 1인, 총 5인)의 심의를 거쳐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선정한 후 식품공학을 전공한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자동단백질분석기 등 18종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게 한 다음 시험결과에 대하여 다시 위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 사실, 소비자보호원이 시험한 항목은 단백질, 칼슘 및 인, 무지고형분, 비타민 씨(C), 성상, 비중, 산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수, 포스파타아제, 유산균수, 용량,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비투(B₂), 비타민 에이(A) 항생물질, 단백질환원가, 카제인, 단백질 등 총 21개 항목인데, 파스퇴르우유의 경우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인, 무지고형분은 최고치, 비타민 비투(B₂), 칼슘, 단백질은 2~3번째로 나타나 초고온살균제품에 비해 비교적 우수하고, 비타민 에이(A) 항생물질, 단백질환원가는 5번째, 비타민 씨(C), 카제인은 최저치를 나타내고, 세균수는 초고온살균제품에서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은 반면 파스퇴르우유에서는 3,800마리가 나오고, 유산균도 초고온살균제품에서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은 반면 파스퇴르우유에서는 550마리가 나왔으며, 단백질환원가는 최저치를 나타낸 사실,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시험항목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이러한 항목별 수치를 종합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종합적 평가를 발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유의 단백질이나 칼슘 등 영양가치의 분석은 무기분석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여서는 안되고 유기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함에도 소비자보호원이 단백질 및 칼슘을 무기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파스퇴르우유 속의 단백질이나 칼슘이 다른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화학분석의 기본원칙도 모른

채 시험검사한 결과이고, 단백질환원가는 단백질이 열에 의하여 변성된 것으로 이는 단백질의 파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파스퇴르우유가 단백질환원가가 낮은 것은 중요한 것임에도 이를 단백질의 맛에 관련될 뿐이라고 한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는 무지의 소치이며, 파스퇴르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씨(C)의 양이 다른 우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온 결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유산균도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인공적으로 배양된 것이므로 1밀리리터당 2억 내지 10억 마리 이상이 필요하나, 우유의 유산균은 천연유산균이므로 힘이 강하여 1밀리리터당 550마리만 들어 있어도 우유의 부패를 억제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을 주는 것임에도 소비자보호원이 파스퇴르우유 속에 들어 있는 유산균의 수가 너무 적어 있느냐마나하다고 한 것은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광고를 일간신문등에 게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임원들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위 시험검사결과 발표에 관해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유기분석에 의한 데이터나 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결과와 다른 분석결과물을 제시하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보호원의 분석결과를 반박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광고를 게재한 사실, 그러나 생유를 살균처리하는 방법은 섭씨 62~65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는 저온장시간살균법, 섭씨 72도에서 15초간 가열하는 고온살균법, 섭씨 135~150도에서 2, 3초간 가열하는 초고온살균법이 있는바, 저온장시간살균처리법과 초고온살균처리법 사이에는 영양분의 변성 및 파괴 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온 장시간살균의 방법으로 생산하는 우유가 초고온순간처리방식으로 생산하는 우유보다 영양분이 덜 파괴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영양분의 차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 것이 아니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비타민 씨(C)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타민 씨(C)는 열에 약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많이 파괴된다는 것이 정설이나 비타민 씨(C)는 열 이외에도 태양광선이나 용존산소의 양, 원유에서의 함량 차이 및 열처리시설 등에 함유된 금속이온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있고, 소비자보호원이 수거한 각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씨(C)의 양을 측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잘못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소비자보호원은 수거한 우유 속에 함유된 비타민 씨(C)의 양을 측정한 결과 다른 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우유에 비타민 씨(C)가 가장 적었다고 발표한 것일 뿐,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씨(C)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나) 식품의 성분 분석방법을 유기분석, 무기분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고 우유의 영양가치의 분석을 무기분석으로 하였다 하여 그 분석이 연습삼아 재미삼아 한 것이라거나 그

분석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다) 유청단백질의 변성이나 칼슘의 용존 상태의 변화를 영양가의 파괴나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라) 우유 속에 들어 있는 유산균이 요구르트 속에 들어 있는 유산균보다 힘이 강하여 적은 수로도 장에 도달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거나 우유의 부패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 주장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저온장시간살균법에 의하여 처리한 우유의 경우에는 유청단백질이나 칼슘 등의 변성이 적고 유산균이 살아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고온살균처리 우유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장점도 있어 영양가 면에서 저온장시간살균법에 의한 우유가 나옴이 사실이나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낫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의 환송전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감정인 이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국립과학기술원의 분석결과보고, 성균관대학교 낙농학과 강 교수의 실험결과에 관한 신문, 잡지 등의 참고자료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권 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씨(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 데이터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에 맞춰 출세를 꿈꾸고 국민 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자사제품인 파스퇴르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그동안 파스퇴르우유를 개발하여 우유의 다양화,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도 자사제품에 대한 애착이 지나친 나머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위 광고 내용에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며, 그밖에 무허가건축, 농지 및 초지전용부분 등을 대부분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육

영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직권에 의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판시 제9의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으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기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판시 제1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 2 제1항(판시 제7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조 제1항(판시 제2, 4의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1항(판시 제5의 허가 없이 초지를 전용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47조 제2항(판시 제3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판시 제6의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판시 제8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판시 제9의 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각 징역

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3호, 제50조(판시 제3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죄중 범죄일람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이 법원의 판단에서 본 사유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4.

□

재판장 판사 박 현 수

판사 강 동 필

판사 홍 대 식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상대 후보진영에서 제공한
선심관광을 다녀오는 버스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게재케 한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에 해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1. 15.자 판결(92고합364)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는 1993년 11월 15일 국회의원

박 의원은 대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8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 문화방송을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로 고소하면서 「위 교통사고 버스는 당 양천갑지구당이 제공한 선심관광용버스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당 양천갑지구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언론사에 이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고소내용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양천뉴스에 의뢰 제작·배포한 것은 명예훼손과 동시에 사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박 의원은, 당 양천갑지구당 당원이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문화방송이 위 지구당이 제공한 선심관광을 다녀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보도하자, 문화방송을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사고버스가 당 양천갑지구당이 제공한 선심관광버스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지역 신문에 보도를 의뢰, 배포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判 決 文

사 건 : 92고합364 가.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박 당 양천갑지구당 위원장

주거 서울

본직 제천시

검 사 : 전상훈, 송관호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이하 강이라고 한다) 양천갑지구당 위원장으로 14대

국회의원선거에 당 양천갑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1991. 11. 8. 22 : 00경 위 지구당 당원인 공소외 이 공소외 정 운전의 경남 관광주식회사 소속 서울 5바 1121호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1991. 11. 10. 오전 6시와 7시 문화방송 라디오 뉴스시간에 위 정 기 위 지구당에서 제공한 선심 관광을 다녀 오다가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자 1991. 11. 10. 문화방송사장 최 과 위 방송 제2사회부 기자 이 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위 제14대 선거시 피고인의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던 당 양천갑지구당 위원장 양 와 당 양천갑지구당을 비방하는 내용인 「이 사건을 조사한 양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지구당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날 당 양천갑지구당(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 주기 위해 수안보온천에 보낸 5대의 관광버스중 1대가 사고차량인 것으로 추정되어 저희 지구당에서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수안보온천에 함께 다녀온 주민제보에 의하면 이날 수안보에 다녀온 버스는 신정2동에 2대 나머지 지역에 3대 등 모두 5대로 그 중 4대는 경남관광 소속이고 나머지 1대는 범아관광 소속으로 그중 1대에는 당 양 의원의 부인도 동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양 와 당 양천갑지구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1. 11. 10. 및 같은달 11. 한국방송공사,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에 위 고소장사본을 배포하여 위 양 및 당 양천갑지구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위 양 를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위 양 및 당 양천갑지구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같은달 11. 22 : 00경 당 양천갑지구당 사무국장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5의 39에 있는 영일인쇄소에 피고인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허위방송에 대하여 엄중항의하였다는 기사와 피고인의 사진 및 ‘주민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사고가 난 지난 8일 수안보에 다녀 온 관광버스들은 당 양천갑지구당(위원장)이 제공한 것들로 신정2동에 2대 나머지 지역에 3대 등 모두 5대이며 그중 4대는 경남관광소속이고 나머지 1대는 범아관광 소속으로 범아관광버스에는 당 양 의원의 부인이 동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라는 내용의 기사가 포함된 양천 뉴스를 제작하도록 의뢰하여 2만부를 납품받아 같은달 12. 당 양천갑지구당 당원등으로 하여금 위 양천뉴스 2만부를 서울 양천갑 선거구 관내의 집집에 배포하게 하여 위 양 및 당 양천갑지구당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나. 같은달 12. 16 : 00경 위 사무국장을 통해 위 인쇄소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양천뉴스 1만 5천부를 납품받아 그때쯤 위와같은 방법으로 양천갑 선거구 관내 일대의 집집에 배포하게 하여 위 양 와 당 양천갑지구당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3. 같은달 말경 위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 인쇄소에 피고인이 당 양천갑지구당 간부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과 문화방송 오보사건은 양천의 명예를 떨어뜨린 수치스런 일로 언론을 이용 당을 음해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의 비열한 음모라는 피고인의 언급 내용이 인용된 기사가 포함된 양천뉴스(특보)를 제작하도록 의뢰하여 5만부를 납품받은 후 같은해 12월 초순경 그중 5천부는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세 사는 공소의 심 등 5천명에게 우편으로 우송하고 나머지 4만 5천부는 당원등으로 하여금 위 선거구 관내의 집집에 배포하게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찰주사보 복두규가 작성한,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

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위 복 가 작성한, 검사 작성의 김 에 대한 진술조서등본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압수된 양천신문(증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991. 12. 31. 법률 제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회의원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39조(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에는 피해자 양

성우에 대한 죄의 소정형에, 판시 제2항 가의 각 죄 상호간 및 나의 각 죄 상호간에는 각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의 소정형으로 각 처벌)

3.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의 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의 소정형에 가중)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5.



재판장 판사 김 영 기

판사 박 성 수

판사 이 성 구

「총학생회장의 의문사에 안기부 요원이 관련됐다」는
피고의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은 데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무죄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16.자 판결(91고단4995)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9.자 판결(93노8080)

事實概要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1994년 11월 9일 중앙대 안성캠퍼

스 총학생회장 이 씨 의문사사건 보도와 관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도 씨의 명예를 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이 기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사람이 의문의 번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안기부 여직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과정에서 검사가 죄명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추가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한겨레신문 사회부기자로서 한겨레신문 1989년 10월 6일자 11면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 총학생회장이던 이 씨의 의문사와 관련하여 『이 씨 사망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하에 이씨가 사망할 당시 안기부 요원인 도씨가 동행했다고 보도하면서 도씨가 이씨의 죽음에 관련된 듯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 도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심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1고단499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적 서울

검 사 : 진 성 진

변 호 인 : 변호사 조용 환, 이 석 태, 김 형 태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기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약칭한다) 인천분실 소속 타자수인 도 를 비방할 목적으로, 1989. 10. 6.자 위 신문 11면 머릿기사『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며 이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숨진 이씨가 배에 타기 직전 이씨를 보았다는 다방 종업원 씨는 이씨가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도아무개(23세)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선장 이 는 이씨와 배에 탄 남자는 백 아무개(22세)라고 말하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 졌다」는 요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 이를 게재한 위 신문을 그날 전국 일원에 보급하게 하여서 공연히 위 도연주가 안기부 직원으로서 이 의 사망 직전 동행하고 이 의 죽음에 관여된 듯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한겨레신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던 이내창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제기되고 있던 의혹들을 취재하여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일 뿐으로서 피고인에게도 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위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단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한 행위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쟁점

피고인이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와 만약 그것이 허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4. 판단

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

공소사실 적시의 보도내용 중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었다」는 부분과 「 이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아무개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및 「이 씨가 이내창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위 와 이 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조서내용과 위 이 및 도 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내용, 그리고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직후에 중앙대학교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사고현장에 다녀온 위 대학교 교수 장 과 위 대학교 학생 김 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장 이 이 를 만나고 난 직후에 이 와의 대화내용을 메모하여 두었다는 「사공 이 씨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서면기재에 의하여 모두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허위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이 는 이 사건기사가 보도된 이후 검찰 및 법정에서 자신이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가 백아무개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장 이 작성한 서면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위 보도내용 가운데 그 진실성 여부가 문제로 되는 부분은 「이 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에 귀착된다.

이 점에 관하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이 사체로 발견되기 4시간 쯤 전인 1989. 8. 15. 15 : 30경에 이 및 그와 동행인 듯한 남녀를 자신의 배에 태워 거문리에서 유립해수욕장까지 건네 주었다는 덕성호 선장 이 는 그 다음날 경찰에서 그 동행한 남녀의 인상착의와 승선 전후의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한데 이어 도 와 백 가 그 동행한 남녀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인 같은 달 19.에도 다시 위 처음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충하는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현장에 내려온 중앙대학교 진상조사단에게는 그 동행한 남녀가 같은 달 17. 거문리 선착장에서 여수행 배를 타려고 한 사람들(즉 도 와 백)이었다고까지 말하였는데, 한겨레신문에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것을 계기로 경찰에서 그 취재원인 이 에게 진위를 확인하러 하자 그는 같은 해 10. 8. 이 과 남녀 각 1명이 동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녀가 도 와 백 라고 꼬집어 말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보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 같은 달 18. 도 와 백 를 대질시키자 그들이 이 과 동행한 남녀가 아니라고 단언하였으며 그 후 도 가 한겨레신문사측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 및 당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

들어 위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른 목격자로서 이름을 최 ○○라고 밝힌 삼호다방 종업원(위 ○○라는 이름이 본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그냥 최 ○○라고 호칭한다)은 같은 해 8. 19. 경찰관이 이 ○○의 사진을 보여 주자 그와 그의 일행인 듯한 남녀를 같은 달 15. 15 : 00경 위 다방에서 목격한 사실과 그들의 인상착의 및 행적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같은 달 20. 경찰관이 다시 이 ○○의 사진과 함께 도 ○○가 그 일행인 백 ○○, 박 ○○, 서 ○○, 이 ○○, 박 ○○과 같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도 ○○는 그때 본 여자가 분명한데 함께 온 남자는 이 ○○가 아니라서 ○○인 것 같고 사망한 이 ○○과 닮은 서 ○○를 이 ○○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는 계속 도 ○○ 일행이 이 ○○과 함께 다방에 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위 기사의 당사자인 도 ○○와 백 ○○는 1989. 8. 7. 경 백 ○○가 목포해양전문대학에 함께 재학중인 친구 서 ○○로부터 같은 달 중순 경에 역시 같은 학교 친구인 박 ○○의 집이 있는 거문도로 놀러 가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여자 친구인 도 ○○와 같이 그곳에 놀러가기로 약속한 뒤, 같은 달 11. 경 역시 같은 학교 친구인 박 ○○의 부산집에 전화를 하였더니 마침 위 서 ○○가 그곳에 와 있어 그들에게 같은 달 14. 거문도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14. 10 : 10경 도 ○○와 백 ○○가 함께 부천을 출발하여 같은 날 16 : 30경 여수에 도착한 뒤 박 ○○에게 전화 걸어 다음날 거문도에 들어가겠다고 알려 주고는 여객선터미널 부근에 있는 여관에서 일박하고, 같은 달 15. 08 : 00경 박 ○○의 집에 가지고 갈 선물용으로 썬썬오렌지 1상자를 사들고 신영고속체리호편으로 여수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 : 00경 거문항에 도착하였으나 마중나온 사람이 없어 13 : 10경 박 ○○에게 전화하여 마중나오도록 요청하고는 기다리는 동안 매점에서 컵라면으로 시장기를 때우고 있었는데 14 : 30경 이미 박 ○○의 집에 와 머물고 있던 박 ○○와 서 ○○가 마중나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뒤, 박 ○○이 사는 동도행 배편이 있는 17 : 00경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므로 넷이서 근처에 있는 영국군 묘소를 구경하고 부근의 산과 해변을 둘러 보면서 사진도 찍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17 : 00경 ○○이 운행하는 거문호편으로 동도에 있는 죽촌이라는 마을의 박 ○○집에 도착하여 이틀동안 위 박 ○○, 서 ○○ 및 그들과 함께 온 이난희와 위 박 ○○ 및 그의 동네 남녀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지내다가, 같은 달 17. 18 : 00경 신영고속체리호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거문리 선착장에 나와 매표하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과 동행했다는 남녀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영문도 모른 채 여수경찰서에까지 와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일 뿐

위 이내창과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
역시 위 도 , 백 와 거문도에서 합류하게 된 경위 및 거문도 도착 이후의 행적에 관
하여 도 , 백 의 위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비록 위 이 와 최 가 처음에는 사망한 이 과 동행한 남녀
가 마치 도 및 백 인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게 된 경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자신들
의 진술이 가져 온 의외의 파문에 놀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피하려 했기 때문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위 이 가 이 과 동행했던 남녀가 백 와 도 라는 것을 경찰
관 앞에서 꼬집어 말한 사실은 전혀 없고, 위 최 는 사진상으로 본 서 라 이 을 같
은 사람인 것으로 혼동하였으며, 위 두사람이 말하는 남녀의 인상착의가 서로 일치되지 않
는 점이 많을 뿐더러 도 , 백 의 실제 모습과도 차이가 많고, 위 두 사람 모두 실제
의 도 , 백 와 대질한 자리에서는 그들이 그때의 남녀가 아니라고 하는 등으로 위
두 사람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1989. 8. 15. 오후는 일기가 비록 쾌청하기는 하였으나
바람이 평상시보다 심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 거문도 3개 섬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들
이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결항하였다는 것이어서 만약 도 등이 서도의 유림해수욕장까
지 이 과 동행하여 간 뒤 이 의 죽음 직후에 곧바로 거문도로 돌아온 것이라면 그들
이 이용했을 만한 배편은 한정되어 있어 그들을 태워 준 배와 목격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
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격자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하여 도 와 백 의 진술은 적어도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8. 15. 오후부
터 거문도 및 동도의 죽촌부락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 분명한 서 , 박 , 박
, 이 등의 각 진술 및 영국군 묘소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찍었다는 도 의 사
진 사본(당원의 서증조사 결과로 변호인이 제출한 이 의 변사기록 제1466장, 피고인측
의 증제2호증의 20)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위 서 등이 이
의 변사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다가 그들이 도 와 백
를 위하여 사전에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하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위 도
의 사진 역시 조작되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도 와 백 는 같은 해 8. 7. 경부터 위 서 등과 거문도에서 합류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고 거문도에 들어 오기 직전까지 몇차례에 걸쳐 들어가는 배편 및
시간 등에 관하여 빅 과 전화통화까지 하는 한편 신영체리호 탑승시에는 이 에 뒤

이어 기재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이 을 사망(그것도 타살)하게 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의 사망직후에 그들이 별반 이상한 점을 보이지 아니한 채 위 서의 일행과 함께 어울려 논 사정 역시 이 의 사망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이 사망하기 직전의 알리바이에 관한 도 와 백 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이 사망하기 직전에 도 , 백 와 동행하였다는 위 한겨레신문의 기사 내용은 결국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안기부 인천분실의 타자수에 불과한 도 를 수사나 정보와 관련하여 고도로 훈련된 안기부 직원인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안기부 요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안기부가 이 의 사망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허위의 인식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도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 아래 감히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음을 요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한겨레신문 관계자인 권 등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보도 경위,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변사 전후의 이 의 행적과 그의 밝혀진 사망원인, 도 와 백 가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나 목격자로 나타난 이 , 최 의 경찰에서의 처음 진술 및 그 진술의 번복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이 의 사망에 도 등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데다가, 한겨레신문이 비록 그 당시 공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에 영향력 있고 책임있는 유력 일간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감히 이를 위 신문에 보도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평양에서 벌어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임의로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사람이었던 이 의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주요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도 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보도를 도 에 대한 비방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보도내용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도 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형법 제309조 제2항이나 그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과연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그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행위자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것이라면 형법 제15조에 의하여 행위자를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 31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바, 아래에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의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 또는 목격자로서 조사받은 도 , 백 , 박 , 서 , 이 , 박 , 김 , 이 , 최 , 강 , 박 등의 각 진술과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직후 현장에 내려가 탐문하고 사체의 부검에도 참여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 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서면의 기재내용, 위 장 과 함께 현장에 내려가 탐문활동을 한 중앙대학교 학생 김 의 진술, 이내창의 사체부검결과와 이 의 변사사건 기록에 편철된 증거능력 있는 각종 조서 및 보고서와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무렵은 공소의 임 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이라

약칭한다) 대표로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것을 계기로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안기부의 전면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위 이은은 전대협소속인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총학생회장으로서 1989. 8. 14. 오후에는 총장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에는 8. 15. 기념행사를 주도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아무런 연락이나 편지도 남기지 아니한 채 8. 14. 오후에 돌연 안성에 있는 자취집을 나와 그 다음날 오후 아무 연고도 없는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위 이은을 변사직전에 거문도에서 유림해수욕장까지 자신의 배로 태워다 주었다는 덕성호 선장이 그 당시 이은이 남녀 1명씩과 동행하면서 선착장에서 사진까지 찍었다고 제보해 오며 따라 경찰에서 이은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남녀를 찾아나서게 되었는데 마침 이은이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타고 온 신영훼리호의 승선자 명부에 이내창에 뒤이어 학생신분으로 기재된 도와 백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도와 백가 그 일행인 박과 함께 8. 17. 오전 거문도 선착장에서 여수행 신영훼리호를 타려 하자 경찰은 이들을 여수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가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사실, 한편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내려간 중앙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이 위 이은의 말을 토대로 이은의 사진과 위 도, 백의 사진을 함께 들고 목격자를 찾던 중에 거문도 선착장 부근의 삼호다방 종업원인 최가 위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나섬에 따라 경찰에서 위 최와 이은의 진술을 듣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이은과 동행한 남녀가 도, 백인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등 그 진술변복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사실, 더욱이 백과 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영훼리호의 탑승자 집계표를 이내창에 뒤이어 제출하였을 뿐더러 원래 8. 15. 07:00에 출발하는 쾌속정인 타코마호를 예약하고서도 이은이 이용한 신영훼리호로 배편을 바꾼 사실이 밝혀졌고, 위 이은의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결과는 익사로 결론이 나왔지만 그 부검에 참여했던 위 장은 그 사체에 커다란 두피하출혈과 두피박탈, 안면부피하출혈, 우측경부, 흉부, 복부, 배부 및 둔부에 표피박탈, 상하지 곳곳에 표피박탈 또는 피하출혈 등이 있는 점을 들어 타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 모두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이은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과 안기부 요원인 도였다」라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안기부의 추적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 거문도에까지 와서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사망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안기부 직원인 도 가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오는 배에 위 이 과 동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나아가 이 의 일행이 거문도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까지 나왔으나 그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6.

판사 김 희 태

2審 判決文

사 건 : 93노808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적 서울

항 소 인 : 검 사

검 사 : 김 호 철

변 호 인 : 변호사 조용환, 김형태, 이석태, 백승현, 김기중, 정연순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16. 선고 91고단4995판결

주 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기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약칭한다) 인천분실 소속 타자수인 도 를 비방할 목적으로 1989. 10. 6.자 위 신문 11면 머릿기사 『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며 이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숨진 이씨가 배에 타기 직전 이씨를 보았다는 다방종업원 최 씨는 이씨가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도아무개(세)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선장 이 는 이씨와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세)라고 말하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 졌다」는 요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 이를 게재한 위 신문을 그날 전국 일원에 보급하게 하여서 공연히 위 도가 안기부 직원으로서 이 의 사망 직전 동행하고 이 의 죽음에 관여된 듯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이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와 만약 그것이 허위인 경우라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이 차례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첫째, 공소사실 적시의 보도내용 중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었다」, 「최 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아무개였다고 진술했다」, 「이 가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라고 말하였다」,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사실로 인정되나, 「이 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원심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주요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사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도 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있었다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보도를 도 에 대한 비방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피고인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최 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아무개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및 「이 가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취재원인 최 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이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보도내용중 주요부분인 「이 이 사망직전에 동행한 사람은 백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주요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를 도에 대한 비방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할 잘못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 제2의 가. 항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최 가 경찰에서 이 과 동행한 여자를 사진으로 보니 도아무개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및 「이 가 이 과 함께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 에 대한 각 진술조서(1989. 8. 19.자, 1989. 8. 20.자), 이 에 대한 각 진술조서(1989. 8. 16.자, 1989. 8. 19.자)의 각 진술기재, 증인 장, 김 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장 작성의 서면(‘사공’ 이 씨의 증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최, 이의 각 진술의 내용이 착오 등으로 인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으로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동인물에 대한 취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이상 이를 허위사실의 보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위 제2의 나. 항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보도내용중 「이 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였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보도 경위, 변사전후의 이 의 행적과 밝혀진 사망원인, 도 라 백 가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나 목격자로 나타난 이 , 최 의 경찰에서의 처음 진술 및 그 진술의 반복과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이 의 사망에 도 등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작성할 당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및 이 사건 보도내용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중 한사람이었던 이 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주요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도 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있었다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보도를 도 에 대한 비방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형법 제309조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과 형법 제310조의 요건인 「공공의 이익」을 혼동하였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 판결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제2의 다. 항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심공소사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아가 피고인에게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위 판단부분의 잘못을 비난하고 있으나 다음의 예비적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죄명에 예비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 법조에 예비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기자인 바, 1989. 10. 6.자 위 신문 11면 머릿기사『이 씨 사망 전 안기부 요원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며 이중 여자는 안기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 졌으며, 숨진 이씨가 배에 타기 직전 이씨를 보았다는 다방종업원 최 씨는 이씨가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도아무개(ㄱ)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선장 이 는 이씨와 배에 탄 남자는 백아무개(ㄱ)라고 말하고 도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 졌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이를 게재한 위 신문을 그시경 전국일원에 보급하게 하여서 공연히 위 도가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이 의 사망 직전에 동행하고 이 의 죽음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된 듯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 내용중「이 이 사망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 와 안기부 요원인 도 었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실의 착오로 보아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피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기사는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 이 거문도의 외판 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제3의 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기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신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원심 판결문 제11면 12행~제14면 제5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공소사실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적시된 사실중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일부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기사내용만 허위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의 위 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며, 또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의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위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9.

□

재판장 판사 이 신 섭
판사 김 용 섭
판사 강 영 수

.....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4. 2. 22.자 판결(94고단1)

광주지방법원 1994. 7. 8.자 판결(94노276)

대법원 1994. 10. 28.자 판결(94도2186)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994년 10월 2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재판부에 환송했다.

피고 이 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벽지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의 관리인이던 김 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구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보성지구 국회의원인 유 의 압력에 의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1993년 8월 24일자 경향신문과 26일자 서울신문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김 , 유 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호소문에서 김 를 「유 의 자금책의 하수인」으로 지칭하면서 김 가 방화범인데 유 의 압력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피고인이 KBS광주방송국에 근무하는 김 과 법무부 차관실을 방문하여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차관과 지청장과의 통화내용이 「보성지구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내용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호소문 게재가 오로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고 전제하고 「원심은 허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4고단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전남

본적 전남

검 사 : 김 석 우

변 호 인 : 변호사 신 현 일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8. 19:30경 피고인이 경영하던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709, 같은면 냉천리 173 소재 따사롬벽지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동 대지 및 건물의 관리인이던 피해자 김 ○ ○ 를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같은해 5. 21. 구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이에 위 김 ○ ○ 가 방화범임에도 보성지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유 ○ ○ 의 압력에 의해 동 사건이 왜곡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피해자 김 ○ ○ 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3. 8. 24.자 경향신문, 1993. 8. 26.자 서울신문의 각 2면 하단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위 김 ○ ○ 를 방화범으로 고발한 이유 17가지를 적시하고 위 김 ○ ○ 를 「위 유 ○ ○ 의 자금책의 하수인」으로 지칭하면서 동인이 방화범인데 국회의원인 위 유 ○ ○ 의 압력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처럼 적시하면서 그 단적인 예로 사실은 자신은 공소의 김 ○ ○ 이 1992. 11. 13. 14:00경 법무부 차관실에 방문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 부속실에 대기하고 있어 위 김 ○ ○ 과 차관과의 대화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차관과 순천지청장과의 사이에 전화통화가 없었음에도 법무부 고위층이 직접 순천지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구례화재 사건을 알고 있는가, 왜 수사를 안하는가」라고 하니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너무 심하여 못합니다」 「압력이라니, 누구 압력인가」 「보성지구 국회의원이다」 「불낸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어떤 관계인데」 「불낸 사람은 국회의원의 자금책이며, 이질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게재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김 ○ ○ 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박 ○ ○ 작성의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7조,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뇌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1994. 2. 22.

판사 박 보 영

2審 判決文

사 건 : 94노27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 기 전 남

본 적 전 남

항 소 인 : 피 고 인

검 사 : 이 중 건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4. 2. 22. 선고, 94고단1 판결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였던 벽지생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의 김 가 위 공장에 방화를 하였다는 확신이 들어 그를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가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다가 무혐의처리하므로 공소의 김 과 함께 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법무부 차관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이 있어 이에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케 한 것으로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이 위 호소문을 게재케 한 것은 오로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신문에 게재한 내용의 요지는 위 김 가 위 공장을 방화하였는데 그가 국회의원인 공소의 유 의 자금책의 하수인이어서 위 유 의 압력에 의하여 위 방화사건이 왜곡되어 동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법무부 차관을 방문하였을 때의 대화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이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케 한 것이 오로지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8.

재판장 판사 최 훈 장
판사 좌 진 수
판사 손 창 환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4도218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상 고 인 : 피 고 인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4노276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3. 8. 24.자 경향신문과 같은 달 26.자 서울신문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호소문」을 게재하였는 바, 그 내용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각 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한 것이 오로지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김 ○ ○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김 ○ ○ 를 이 사건 방화 범으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 김 ○ ○ 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KBS 광주방송국에 근무하는 공소의 김 ○ ○ 을 만나 위 화재사건에 대하여 상의하자 위 김 ○ ○ 이 자신이 법무부 차관을 잘 아니 같이 가자고 하여 1992. 11. 13. 그와 함께 법무부 차관 부속실에 갔었는데 혼자 차관을 만나고 나온 위 김 ○ ○ 이 피고인에게 김 ○ ○ 의 사위인 공소의 문 ○ ○ 이 보성지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유 ○ ○ 과 이질간이고 문제의 방화사건이 유 ○ ○ 의원의 압력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그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방화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달라는 취지로 호소문을 낸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김 ○ ○ 에 대한 진술조서와 박 ○ ○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므로, 만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김 ○ ○ 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검찰 주사보 임 ○ ○ 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2정)에 의하면 김 ○ ○ 도 위 임 ○ ○ 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그가 피고인과 함께 법무부 차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은 부속실에서 기다리고 김 ○ ○ 은 차관실에 들어가 그 방화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까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김 ○ ○ 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과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김 ○ ○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유 ○ ○ 이 그 방화사건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김 ○ ○ 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증인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도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고 그 내세운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28.

□

재판장 대법관 박 만 호
대법관 박 준 서
주심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16.자 판결(94고단2396)

서울지방법원 1995. 4. 4.자 판결(94노6312)

대법원 1995. 6. 30.자 판결(95도1010)

事實概要

대법원 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995년 6월 30일, 간행물에 기재한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피고 현 씨의 상고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 현 씨는 1993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인 박 가 1994년 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추대되자, 피고측 조합에서 발행하는 「원풍재건축뉴스」 94년 3월호에 「박 는 크고 작은 이권마다 개입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다 파면당한 인물」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조합원 1,20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됐다.

1심 재판에서 피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담당판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고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점은 없다」고 판결하면서 다만 피고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측은 이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1審 判決文

사 건 : 94고단239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현

주거 서울

본직 서귀포시

검 사 : 이 영 주

변 호 인 : 변호사 김 시 현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 31.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7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피해자 박 가 1994. 2. 6. 같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추대되자, 이른바 구조합측의 대표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4. 3. 2. 피고인측이 주도하는 이른바 신조합측에서 발행하는 「 재건축뉴스」라는 간행물(1994년 3월호)에 「박 는 어떤 인물인가? 박 는 1990년도에 아파트 자영회장으로 1개월간 있을 때 크고 작은 이권마다 개입

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다 파면당했다. 심지어 사과장사에게까지 검은 손을 댔습니다.]라고 사실을 기재하여 조합원 1,21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박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박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6정에 편철된 「원풍재건축뉴스」 간행물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개전의 정)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94. 11. 16.

판사 최 영 룡

2審 判決文

사 건 : 94노631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천

주거 서울

본적 서귀포시

항 소 인 : 피고인

검 사 : 위 성 운

변 호 인 : 변호사 김 시 현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16. 선고 94고단2396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재건축 뉴스」라는 간행물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박 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비방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전상이 현저한 점등 정상참작, 유예되는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4.

재판장 판사 최 형 기
판사 이 창 형
판사 윤 강 열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5도101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현

상 고 인 : 피 고 인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4. 4. 선고, 94노6312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같은 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당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 참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30.



재판장 대법관 신 성 택
대법관 천 경 송
주 심 대법관 안 용 득
대법관 지 창 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인정되나,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구성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1994. 12. 23.자 판결(94고단1165)

事實概要

대구지방법원 은상길 판사는 1994년 12월 23일 중앙일보 대구 주재기자인 김 씨, 홍 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들에게 명예훼손혐의를 인정, 각 자격정지 1년에 처했다.

피고들은 1993년 3월 23일자 중앙일보에 당시 대구 서부경찰서장에 재직중이던 피해자 김 씨에 대해 「김 총경이 임야 및 농지 5,000평을 불법훼손, 호텔 부지를 조성했으며 부동산투기를 벌여온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 부분에 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만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判 決 文

사 건 : 94고단116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피 고 : 1. 김

주거 대구

본적 경북

2. 홍

주거 대구

본적 부산

검 사: 김 정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 석 구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앙일보 대구 주재기자들인 바, 공모공동하여 1993. 3. 23. 중앙일보 지상에 당시 현직 경찰총경으로서 대구 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중에 있던 피해자 김 의 신상에 대한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 보도함에 있어 당시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신 검사 가 위 김 를 부동산 투기혐의로 소환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동인이 그 아들인 김 의 명의로 1980년대 초반에 수차에 걸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451 소재 전 1,329평방미터를 비롯한 위 기성리 일대 토지 32필지, 면적 합계 481평방미터(약13.757평)는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인 팔공산 도립공원과는 산림보전지역인 산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팔공산도립 공원지역 개발문제와 무관하며, 위 김 가 소유하고 있는 위 32필지 중 임야는 2필지 면 적 합계 9,468평방미터(약 2,864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지목이 전, 답 또는 대지 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인 소유의 위 토지 인근에 소재한 위 동명면 기성리 답 656의 1, 656의 8등 2필지 면적 합계 1,866평방미터(약 564평)는 동인의 소유가 아닌 공소 외 김 의 소유 토지로서 동인이 그 스스로 1992. 10.경 칠곡군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농가주택, 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농가주택 및 창고,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김 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 형사2부 신 검사는 23일 대구 서부 경찰서장 김 총경이 임야 및 농지 5,000평을 불법훼손, 호텔 부지를 조성했으며, 무단 형질변경, 불법건축행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벌여온 혐의를 잡고 김 서장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81년 7월 팔공산 자연공원개발지구인 경북 칠곡군 기성리 일대 2만여평을 매입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장비등을 동원하여 임야 5천여평을 파헤쳐 호텔 부지 및 목장을 조성한 혐의다. 김 서장은 또 지난해 10월 이 지역 내 농경지 6백여평에 농가주택과 창고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

아낸 뒤 60평 규모의 식당용 건물과 2백평 넓이의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김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가 김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정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신문기사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각 자격정지형 선택)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 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하여 중앙일보에 보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김 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994. 12. 23.

□

판사 은 상 길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仲裁業務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是正勸告業務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회의**

- 중재회의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定期刊行物の登録 등에 관한 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新聞·通信·雜誌·其他刊行物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言論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定期刊行物”이라 함은 동일한 題號로 年 2回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新聞·通信·雜誌·其他刊行物을 말한다.
2. “一般日刊新聞”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 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3. “特殊日刊新聞”이라 함은 産業·科學·宗教·教育 또는 體育등 特定分野(政治를 제외한다)에 局限된 事項의 報道·論評 및 輿論 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4. “外國語日刊新聞”이라 함은 外國語로 발행하는 一般日刊新聞 또는 特殊日刊新聞을 말한다.
5. “一般週刊新聞”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回 발행하는 刊行物(週 2回 또는 月 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特殊週刊新聞”이라 함은 産業·科學·宗教·教育 또는 體育등 特定分野(政治를 제외한다)에 局限된 사항의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回 발행하는 刊行物(週 2回 또는 月 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通信”이라 함은 電波法에 의하여 無線局의 許可를 받아 外國의 通信社와 通信契約를 체결하고 國內外의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등에 관한 報道·論評 및 輿論등을 傳播함을 目的으로 행하는 送受信 또는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8. “雜誌”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産業·科學·宗教·教育·體育 등 全分野 또는 特定分野에 관한 報道·論評·輿論 및 情報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동일한 題號로 月 1回 이하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製冊된 刊行物을 말한다.
9. “其他刊行物”이라 함은 第2號 내지 第8號외의 刊行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10. “發行人”이라 함은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代表者를 말한다.
11. “編輯人”이라 함은 發行人이 選任한 者로서 定期刊行物の 編輯에 관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12. “印刷人”이라 함은 發行人이 選任한 者 또는 發行人과 印刷契約를 체결한 者로서 그 定期刊行物の 印刷에 관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13. “支社” 또는 “支局”이라 함은 記事取材등을 目的으로 定期刊行物の 發行所 所在地 외

의 지역에 설치된 事務所를 말한다.

第3條(兼營禁止 등) ① 日刊新聞(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通信은 相互兼營할 수 없으며, 放送法에 의한 放送局(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 兼營할 수 없다.

② 日刊新聞·通信·無線放送 또는 綜合有線放送的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所有하는 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企業 또는 系列企業은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의 理事(合名會社の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の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나 妻의 三寸이내의 血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直系卑屬의 配偶者가 그 總數의 3分の 1을 넘지 못한다.

⑤ 公報處 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刊新聞 및 通信의 發行人에게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4條(外國資金의 流入禁止) 누구든지 定期刊行物의 발행을 위하여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로부터 寄附金·贊助金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財産上의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外國의 教育·體育·宗教·慈善 기타 國際的 親善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로부터의 出捐으로서 公報處 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研修) ① 發行人은 從事者의 能力과 資質向上을 위한 研修制度를 設置·운영한다.

② 發行人은 共同으로 從事者의 研修를 위한 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第6條(機能의 보장) ① 發行人은 勞使協調의 精神에 따라 從事者의 勤務環境·處遇 기타 福利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發行人은 從事者의 編輯 및 製作活動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1. 一般日刊新聞은 타블로이드 2倍版 4面 基準의 新聞紙를 時間當 2萬部 이상 印刷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輪轉機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印刷施設

2. 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은 輪轉機 1臺 이상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印刷施設

3. 通信의 발행에 있어서는 電波法에 의한 無線通信施設

④ 第3項의 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와 印刷契約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가 印刷施設(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의 施設에 한한다)을 보유하고 그 印刷施設만으로써 당해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章 登 録

第7條(登録) ① 定期刊行物を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報處 長官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登録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하거나 法人 기타 團體나 機關이 그 소속원에게 無料로 普及할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學習資料 또는 商業廣告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題號

2. 種別 및 刊別

3. 發行人・編輯人 및 印刷人의 住所・姓名・生年月日(發行人 또는 印刷人이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名稱,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者의 住所・姓名・生年月日)

4. 發行所의 所在地

5. 版型

6. 使用語

7. 發行目的과 발행내용

8. 普及方法과 主된 普及對象 및 地域

9. 日刊新聞 또는 通信의 경우는 第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該當施設

② 發行人이 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 代表理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代表理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할 수 없는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다른 理事나 임원을 發行人으로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하고자 하는 者는 登録事項중 刊別을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日刊(隔日 또는 週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週刊(週 2회 또는 月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月刊

4. 隔月刊

5. 季刊

6. 年 2회刊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때에는 公報處 長官은 지체없이 登録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者는 당해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날로부터 6月(年 2회刊의 경우는 1年)이내에 登録된 定期刊行物を 발행하여야 한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發行實績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이미 登録된 定期刊行物의 題號와 동일하거나 混同하기 쉬운 유사한 題號의 定期刊行物은 登録할 수 없다.

⑧ 公報處 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定期刊行物의 登録에 관한 업무를 서울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特殊週刊新聞과 月 1회 이하 發行 刊行物중 無料로 普及하는 定期刊行物

2. 特定地域을 대상으로하여 週 2回 이하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3. 第2條 第9號의 其他刊行物중 週 2回 이하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第8條(필요적 게재사항) 定期刊行物에는 그 登錄의 番號와 年月日・題號・刊別・發行人・編輯人・印刷人・發行所 및 發行年月日을 게재하여야 하며, 數人의 編輯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責任分野와 함께 各自의 姓名을 게재하여야 한다.

第9條(缺格事由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大韓民國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

3. 禁固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다만,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第92條 내지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第9條 第2項・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하여 禁固 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경우에는 執行猶豫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

4. 保安觀察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이나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安處分の 執行중에 있는 者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刑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이 法에 위반하여 登錄이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서 그 登錄이 取消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7. 未成年者,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8. 破產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月 이내에 發行人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 法人이 아닌 者는 定期刊行物 중 日刊新聞이나 一般週刊新聞 또는 通信을 발행할 수 없다.

④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나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가 그 代表者로 되어 있거나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는 法人 또는 團體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普及할 것을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納本) ①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 定期刊行物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定期刊行物 2部를 즉시 公報處 長官에게 納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納本한 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家는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11條(休・廢刊의 申告) ①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그 定期刊行物의 발행을 休刊 또는 廢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公報處 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의한 休刊은 正當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第12條(登錄取消의 審判請求등) ① 公報處 長官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

刊行物の登録을 한 者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月 이하(隔月刊 이하 定期刊行物の 경우는 3回 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定期刊行物の 발행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된 사항을 變更登録하지 아니하고 任意로 變更하여 그 定期刊行物を 발행한 때

2. 發行人(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또는 編輯人이 第9條의 缺格事由등에 해당된 때

3. 第6條 第3項 또는 同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第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財産의 出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 公報處 長官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者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 이하(隔月刊 이하 定期刊行物の 경우는 6回 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定期刊行物の 발행정지를 命하거나 法院에 定期刊行物の 登録取消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録한 사실이 있는 때

2. 定期刊行物の 내용이 登録된 發行目的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發行人의 普通裁判籍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合議部の 관할로 한다. 法院은 審判請求를 접수한 날로부터 3月 이내에 裁判하여야 한다. 登録取消審判事件의 請求・審理・裁判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④ 登録取消審判事件에 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⑤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登録이 取消된 때에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2年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取消된 定期刊行物の 題號로서 定期刊行物を 발행할 수 없다.

第12條의 2(職權登録取消) ① 公報處 長官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を 登録한 者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定期刊行物の 登録을 取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登録후 1年(年 2回刊의 경우는 2年) 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を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月 1回 이하 발행의 경우는 2年 이상) 당해 定期刊行物の 발행을 중단한 때

② 第1項의 取消決定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審議를 위하여 公報處 長官 所屬하에 審議委員會를 두며, 그 구성과 審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聽聞) 公報處 長官이 第12條 第1項 또는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第12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登録取消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定期刊行物の 發行人 또는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定期刊行物の 發行人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支社등의 設置) ①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の 登録을 한 者が 支社 또는 支局을 設置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公報處 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支社 또는 支局은 定期刊行物を 編輯・발행할 수 없다. 다만, 海外의 支社 또는 支局으

로서 公報處 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가 발행하는 定期刊行物에 대하여는 本社가 발행하는 定期刊行物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5條(外國定期刊行物の 支社등의 設置) ① 外國定期刊行物の 支社 또는 支局을 國內에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報處 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公報處 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
3. 당해 外國定期刊行物이 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國家의 威信을 損傷하게 하는 記事를 게재한 때

第3章 침해에 대한 救濟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 (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的 內容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言論報道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8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

이 있는 者 중에서 公報處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중 5分の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 등)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6條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는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는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로부터 21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事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送達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效力을 상실한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の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 第6項의 仲裁不成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訟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제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9條의 2(不服節次)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4章 罰 則

第2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産의 出損을 받은 者
3.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者
4. 第12條 第1項, 同條 第2項 또는 第12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나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者
5.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國內에 外國刊行物의 支社 또는 支局을 設置한 者

第2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 就任한 者
2. 第9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編輯人으로 選任한 發行人

第24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2. 第7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登錄된 定期刊行物을 발행하지 아니한 者
3. 第7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發行實績을 유지하지 못한 者
4.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아니한 者
5.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本을 하지 아니한 者
6.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刊 또는 廢刊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社 또는 支局設置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報處 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公報處 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報處 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定期刊行物로서 이 法の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의 登錄對象에서 제외된 定期刊行物은 이 法 施行후 定期刊行物 登錄番號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法 施行日로부터 60日 이내에 定期刊行物登錄證 原本을 登錄廳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이 法 施行日로부터 1月 이내에 發行人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 제목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同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2項 내지 第6項중 “訂正”을 각각 “反論”으로 하고, 同條 第3項중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과 同條 第6項중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를 각각 “放送局이”로 하며, 同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的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중 “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를 “放送”으로 하고, “訂正報道請求事件”을 “反論報道請求事件”으로 한다.

② 綜合有線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 제목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2項 내지 第7項중 “訂正”을 각각 “反論”으로 하고, 同條 第3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과 同條 第6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를 각각 “綜合有線放送局이”로 하며, 同條 第9項을 第10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 第10項(중전의 第9項) 중 “綜合有線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를 “綜合有線放送”으로 “訂正報道請求事件”을 “反論報道請求事件”으로 한다.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的를 청구할 수 있다.

第4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중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の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제2조(동일계열의 기업등) ①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 ① 공보처 장관이 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관계 유무
- ② 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은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보처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통신의 경영금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발행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외국자금의 유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금유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자금유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연단체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제5조(부수인쇄시설)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이라 함은 조판시설 및 제판시설을 말한다.

제2장 등 록

제6조(등록) 법 제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
2.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 가. 자기소유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서류
 - 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대여등의 계약서
 - 다. 타인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 및 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5. 법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계약서 및 당해 인쇄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발행인·편집인 또는 인쇄인이나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해당 각호에 규정된 서류
- ② 공보처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발행실적) ① 법 제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실적을 말한다.

1.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총발행일수(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총발행횟수의 4분의 3이상 발행한 실적
 2.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4회이상 발행한 실적
 3. 계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3회이상 발행한 실적
 4. 연2회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1회이상 발행한 실적
- ② 제1항의 경우에 일간정기간행물의 발행실적은 1일에 2회이상 발행하거나 합병호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1회의 발행으로 본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공보처 장관은 법 제7조 제8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에 대한 법 제7조 제1항·제4항, 법 제10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24조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앞에 당해 시·도의 등록임을 알 수 있도록 당해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간별에 따른 다음의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주 간 : 다
2. 월 간 : 라
3. 격 월 간 : 마
4. 계 간 : 바
5. 연 2회간 : 사

③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간별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보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고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납본)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납본을 받은 때에는 그 1부를 즉시 공보처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휴간신고)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휴간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기간행물휴간신고서를 공보처 장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12조·제14조·제16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6월
2. 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방학·휴교 등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기간
3.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하기까지의 당해 기간

제12조(폐간신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폐간한 때에는 폐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 장관 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보처 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보처 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및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법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보처 장관”은 “행정 또는 정부부시장·부지사”로,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은 “시·도공보관”으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시·도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증을 공보처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의 절차) ①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지정일 7일전에 처분대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처분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그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사등의 설치신고)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사(지국) 설치신고서에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사(지국) 설치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 발행) 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발행승인신청서를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19조(허가증) 공보처 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사설치 변경허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이력서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공보처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2조(언론중재위원회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보처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재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재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34조(과태료 부과) ① 공보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의 납부)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 1만원
 2.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 : 5천원
 3.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 : 2천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중지)로써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36조(서식) ①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이를 공보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공보처 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제1중재부 서울특별시 제2중재부 서울특별시 제3중재부 서울특별시 제4중재부 서울특별시 제5중재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원
부산광역시 중재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원
대구광역시 중재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광주광역시 중재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대전광역시 중재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
경기도 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강원도 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일원
충청북도 중재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일원
전라북도 중재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일원
경상남도 중재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일원
제주도 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일원

방송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의 내용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反論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

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內容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사실적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프로그램 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供給者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⑩ 綜合有線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주소

사 무 처 및 서 울 중 재 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02)732-6031~5 725-0050 FAX.730-9420 · 5487
부 산 중 재 부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2-3(대광오피스텔 408호)	(051)247-3486
대 구 중 재 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1-9(3 · 1빌딩 301호)	(053)755-0108
광 주 중 재 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20-31(금오빌딩 4층)	(062)222-7033
경 기 중 재 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송림빌딩 703호)	(0331)211-9027
강 원 중 재 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대양빌딩 6층)	(0361) 55-2878
충 북 중 재 부	충북 청주시 석교동 37-5(성화빌딩 302호)	(0431) 52-1250
충 남 중 재 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 3동 151-13(선화현대빌딩 203호)	(042)257-0039
전 북 중 재 부	전북 전주시 중앙동4가 50-2(대한생명보험빌딩 4층)	(0652) 88-0010
경 남 중 재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동산빌딩 301호)	(0551) 63-1787
제 주 중 재 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현곡빌딩 4층)	(064) 22-3328

國內言論關係判例集 第3輯

(言論仲裁 통권59호 부록)

1996년 6월 20일 인쇄

1996년 6월 30일 발행

編著 言論仲裁委員會 調査研究室

發行 言 論 仲 裁 委 員 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빌딩

전 화 : 732-6031~5, 725-0050,

730-9498, 7317-571, 588

FAX : 730-9420, 5487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출판되었습니다)

